의안 번호 1272

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연월일 : 2016. 10. 4.(화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회부 : 2016. 10. 7.(금) 라. 위원회심사 : 2016. 10. 24.(월)

2. 개정이유

「식품위생법」에서 위임된 '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'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조)

- 나. 영업장소와 첨부서류(안 제2조)
 -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(공연장)
 -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· 신고증
 - 사용계약·승인 등에 관한 서류
 - ㅇ 도로. 보행자 전용도로
 - 도로점용 허가증
 - ㅇ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
 - 사용계약·승인 등에 관한 서류
 - o 문화의 거리, 물놀이장, 체육시설, 자전거주차장·대여소, 문화의 전당
 - 사용계약ㆍ승인 등에 관한 서류

4. 근거법규

가.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

나.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42조제1항제14호

5. 검토의견

- 「식품위생법」에서 위임된 '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'를 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.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 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〈관계법령〉

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4호

1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·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 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·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 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(이하 "음식판매자동차"라 한다)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 는 경우는 **별표 15의2**에 따른 서류

□ 별표 15의2

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(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)

- 1. 유원시설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(이하 이 호에서 "유원시설 업 영업장"이라 한다)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(이하 이 표에서 "휴게음식점영업 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 우
 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 시설업자(이하 이 호에서 "유원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 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 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 증 사본
 - 나.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 려는 경우: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 한 서류
- 2. 관광지 등: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이 호에서 "관광지 등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
 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토지·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 한 자(이하 이 호에서 "시설운영자"라 한다)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 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
 - 나.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 등에서 휴게음식 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

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
- 3. 체육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(이하 이 호에 서 "체육시설"이라 한다)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
 - 가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(이하 이 호에서 "민간체육시설업자"라 한다)가 해당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
 - 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 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다. 민간체육시설업자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,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4. 도시공원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 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- 5. 하천: 「하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
 - 가. 「하천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
 - 나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(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 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)를 받은 자
 - 1) 시 · 도지사
 - 2) 시장・군수・구청장
 - 3)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
- 6. 학교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학교"라 한다)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
- 7. 고속국도 졸음쉼터: 「도로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(같은

- 8. 공용재산: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 우
 - 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
 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: 「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 ·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
- 9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이 호에서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 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: 해 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